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용일¹, 황지현^{2*}

¹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²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Yong-Il Kim¹, Ji-Hyeon Hwang^{2*}

¹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²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조계에서도 화상심리 도입 등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관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주제어 : COVID-19, 국제보건규정, 공중보건, 화상심리, 국제중재

Abstract In order to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on January 30,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at the spread of COVID-19 has met the criteria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under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and proposed a variety of preliminary recommendations to fight against the pandemic accordingly. All of a sudden, people are ordered to wear face-masks in public—which is forbidden for different reasons in many jurisdictions. Of course, the legal world was hit by the virus as well. Needless to mention that where economic and social life will change so drastically, the legal world will change(ex. virtual hearing) as well. Most probably, it will not ever be the same after COVID-19. And where the whole legal world will change, it is easy to state the obvious, namely that COVID-19 has and will have an impac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well. This paper will describe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dealing with this new challenge.

Key Words : COVID-19,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Public Health, Virtual Hear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orresponding Author : Ji-Hyeon Hwang(jhwhang@gwnu.ac.kr)

Received October 6, 2021

Revised November 8,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COVID-19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소위 문명 세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인명 피해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체, 안정적인 경력을 잃었으며 앞으로의 일상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비록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국가들도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사회·경제·교육·문화생활의 섀다운(shut down)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이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범세계적 조급식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판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바,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COVID-19에 따른 중단기적 영향 및 대응을, 제3장에서는 장기적인 영향과 대응을 살펴본다. 이후 제4장에서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결론과 함께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 주제와 유사 또는 동일한 국내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본 논문이 COVID-19 시대의 중재연구에 지침이 되고자 한다.

2. COVID-19에 따른 중단기적 변화와 대응

COVID-19 팬데믹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사회생

활의 섀다운되었을 때에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기존 방식의 중재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통상적인 약속을 줄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약간 주저하는 분위기는 있었다. COVID-19가 국제중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계기는 2020년 3월 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재심리의 취소였다. 한 홍콩회사는 독일 내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저항했으며, 심지어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집행절차의 연기가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약속된 중재심리가 열리기 얼마 전에 홍콩 신청인의 독일 변호사는 홍콩 거주자인 신청인이 중재심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의 일시정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코로나 때문에 중재절차에 참석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충분한 사유로 인정하여 중재심리를 두 달 동안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대측 변호사는 격분했지만, ‘COVID-19’가 중재절차에서 중재 당사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2.1. 단기적인 측면

COVID-19가 중국 중부 어딘가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일화적(逸話的) 질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COVID-19는 국제중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졌다[1]. 우선 단기적인 영향으로는 국제중재 기관들이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으며, 대면심리에서 화상심리로 중재심리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2.1.1. 재택근무의 도입

첫 번째 현상은 대다수의 국제중재기관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직접 배달되는 문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이다. 중재기관들이 깨달은 사안 중 하나는 중요한 모든 기한을 일시정지해야 하고, 중재기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면심리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입법부나 정부가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중재 개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미 중재가 개시된 경우에도 비상사태 동안 심리를 일시정지하도록 하였다[2]. 하지만 대부

분의 중재기관들은 건물 폐쇄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 등의 방식을 통해 중재심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중재 사용자들을 안심시켰다[3,4].

2.1.2. 화상심리의 도입

재택근무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안전성 및 중재심리 수행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걱정이 사라지고 나자, 중재기관들은 사용자를 고려해야 했다. 중재기관의 도움을 통해서든 스스로의 힘으로든, 당사자들은 중재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상심리를 여는 것임을 깨달았다. 실제로, 화상회의 등의 기술적 도구를 이용한 중재심리는 최선의 해법처럼 보였다. 2020년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IDRC")는 2019년에 비해 '서울 IDRC' 화상심리 서비스를 이용한 심리 건수는 500%, 일수는 46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5].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 역시 COVID-19 시작 이래 HKIAC의 화상심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수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HKIAC에 접수된 심리 관련 문의 중 65%가 화상심리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6].

일반적으로 COVID-19 발생 이래 화상심리 경험은 꽤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중재인인 Timothy Cooke는 2020년 3월, 한 사건의 중재심리에서 당사자들과 원고의 변호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Maxwell Chambers에 실제로 참석했지만, 런던에 있는 피고의 변호사는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6명의 증인도 런던, 시드니, 대만 등에서 증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의 경험을 "중재심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상심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졌다. 구두변론을 듣는 것은 실제로 대면심리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요약했다. 런던에서 증인을 반대신문했던 피고측 변호사조차 "화상심리 기술로 중재심리를 진행할 때의 경험은 대면심리와 매우 비슷하므로, COVID-19가 끝나더라도 고객에게 이 방식을 조심스럽게 추천할 것이다. 차선의 옵션이 아니라, 차질 없이 중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첨단시설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7].

더 확실한 사례 중 하나는, 2020년 4월에 열린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Willem C. Vis Moot Court Competition)일 것이다. 보통 이 경연대회는 비엔나

에서 열리지만, 이번에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 경연대회에서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의 현 법원장인 Paula Hodges는 "기술이 아주 잘 작동하면서, 미래 '화상중재심리의 세계'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것이 가능하며,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요컨대, 화상심리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심지어 화상심리가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믿는다[8].

하지만 화상심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험이 풍부한 중재 실무자들은 온라인에서는 증인 증언의 증거 품질이 낮아진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대신문 때 중재인이 증인의 대답과 태도를 관찰분석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으로 심리를 수행할 때에는 증인이 중재인이나 상대방 모르게 비밀리에 조언을 받거나 숨겨둔 문서를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심지어 기술적 문제로 심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들도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대받지 않은 참가자가 화상심리에 참여·간섭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화상회의 서비스의 유명한 공급자 중 하나인 Zoom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9].

나아가,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당사자나 증인 등이 중재인이나 판사로부터 직접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경우, 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 Broward County의 판사인 Dennis Bailey는 복장에 대한 권고를 웨스턴 변호사협회(Weston Bar Association) 웹사이트에 올렸다. 그는 "한 남성 변호사는 셔츠를 입지 않은 채로 등장했고, 심지어 한 여성 변호사는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부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법원심리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10].

2.1.3. 화상심리의 정당성

많은 중재규칙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최근까지의 관행은 '중재심리'가 대면심리를 의미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양당사자가 화상심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집트 중재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인 Mohamed Abdel Wahab은 중재판정부가 양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화상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11]. 이러한 주장은 특히 화상심리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 준거법 또는 관할 절차규칙에 전혀 없고, 중재판정부가 일방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 중기적인 측면

국제중재기관들은 COVID-19와 관련된 문제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곧 깨달았다. 따라서 각각의 중재기관들은 본사 수준에서 즉흥적인 대응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욱 지속가능한 사건 관리를 제공해야 했다. 국제중재 사용자들도 팬데믹 시기의 분쟁 취급 방법에 관한 지침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COVID-19가 끝나도 COVID-20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명백해졌다[12].

국제중재기관들은 이전 경험이나 최근의 경험을 기초로 중재 사용자들을 돕기 위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A)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과 중재를 이용한 위험 완화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재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COVID-19 관련 제출 동의서 샘플과 절차명령 샘플의 링크도 포함하고 있다[13].

- 앞의 HKIAC는 화상심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HKIAC 화상심리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화상심리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매우 실용적이며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요컨대 규칙 10.a. (“발언하지 않을 때 마이크 끄기”), 10.c. (“다른 참가자가 발언 중일 때 말하지 않기”), 10.h. (“얼굴 움직임을 이용해서 발언자를 추적하는 카메라 사용 중에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등이다[14].

- 앞의 LCIA는 2020년 3월 18일, 새로운 중재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부터 원격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격으로 LCIA와 소통하는 방법을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15].

- 2020년 4월 9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국제중재재판소는 ‘COVID-19 팬데믹 조치에 관한 ICC 지침서’(“ICC 지침문서”)를 발표했다. ICC 지침서는 COVID-19 팬데믹이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조치를 제시한다. 특히, 화상심리 운영에 관한 정보와 두 개의 부록(화상심리 프로토콜의 체크리스트/사이버 프로토콜에 관한 조항 및 화상심리 운영에 관한 절차규칙)을 제안했다[16].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COVID-19 업데이트를 자체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SIAC 소장인 Gary Bom은 2020년 4월 28일자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사건 관리와 더불어 ‘사무국과 함께 하는 COVID-19에 관한 대화’라는 월례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해 COVID-19가 SIAC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 시리즈에는 사무국과 함께 하는 Q&A 세션, 화상심리 모범사례 및 관련 문제에 관한 정기적인 패널토론, 모의 화상심리, 기타 행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웨비나들은 녹화되어 SIAC 웹사이트와 SIAC의 소셜미디어채널(YouTube, WeChat 등)에 공개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17].

- 스톡홀름상공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중재원은 임시중재를 위한 ‘SCC 플랫폼’을 2020년 5월부터 전세계에 제공했다. SCC의 ‘임시 플랫폼’은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 사이의 소통 및 파일 공유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COVID-19 기간 중 시작되는 중재에는 이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18].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2020년 4월 16일, 계류 중인 모든 ICSID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상심리를 위한 ICSID 서비스 및 기술에 관해 알렸다. 여기에는 최대 1,000명의 참가자를 위한 고휘상도 음성영상(참가자 모두가 모든 중재판정부 구성원, 변호사, 전문가, 증인 등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도 들을 수 있음), 안정적인 보안, 실시간 중재판정부 보고, 동시통역, 파일 공유, 화

상채팅 기능(개인 간 채팅 및 모든 심리 참가자와의 단체 채팅)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19].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COVID-19 팬데믹 중 중재를 적극적으로, 적절히 진행하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사건 제출 시스템 이용, 문서 송달, 심리 진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화상심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부속서도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며, 팬데믹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20].

-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AAA-ICDR)는 (i) '중재인과 당사자들을 위한 화상심리 가이드', (ii) '중재인과 당사자들을 위한 ZOOM을 이용한 화상심리 가이드', (iii) '화상심리 절차 등'을 발표했다[21].

앞의 중재기관들과 국제상사중재원은 2020년 4월 16일, 공동성명으로 화상심리 등에 관해 특히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실무적 조언이 많이 담기지 않는 반면,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사용자들에게 “중재기관들이 원격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중재 사용자들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공동성명은 “당사자 및 중재인들에게 팬데믹의 영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장려하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COVID-19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라”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22]. 이 모든 새로운 규칙·가이드라인은 기존 대면심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되는 중재심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칙·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3. COVID-19에 따른 장기적 변화와 대응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가 분쟁해결 실무자들에게는 좋은 시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몇 중재인들은 COVID-19의 여파로 새로운 중재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사중재 뿐만 아니라 투자중재도 그렇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COVID-19 방역조치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제한·규제가 투자계약체결 시 투자자가 기대했

던 바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스위스중재협회(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ASA) 회장이었던 Markus Wirth는 이 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요컨대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쟁해결 비용도 포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잠재적 비즈니스 분쟁 당사자들이 관행적인 중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분쟁해결 방법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찾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관행적 중재가 선호되는 방법이거나 마지막으로 의지할 유일한 방법일 경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중재절차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3.1. 상사중재의 증가

COVID-19 초기, 로펌 뉴스레터들은 통상적으로 국제중재 이슈를 COVID-19의 구체적인 도전(기업활동과 사회생활의 잦은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제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COVID-19가 국제중재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COVID-19로 인해 기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당사자들은 그러한 의무를 피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반면, 계약 상대방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오랜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내에 ‘불가항력’이나 ‘계약목적달성불능’과 같은 COVID-19가 초래하는 사건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3].

예컨대, 소비자계약에 중재조항이 흔히 포함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크루즈선, 양로원, 병원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 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 및 계약상 의무 회피에 관한 법리와 관련된 문헌이 다수 발표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 중 상당수는 분쟁 절차 없이 화해로 해결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불가항력을 선언하거나 관련 법리에 의지해서 계약상 약속을 철회하려는 당사자의 결정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24].

나아가, COVID-19로 인한 분쟁에 정부 또는 입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세계 몇몇 지역의 무역위원회나 상공회의소가 흔히 쓰는 면책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불가항력증명서 발급이다. 이러한 증명서는 불가항력을 구성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국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제공하는 증명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중재판정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COVID-19로 인한 분쟁의 결과가 증명서 발급주체 스스로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5].

3.2. 투자중재의 증가

대다수의 국가들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중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기업 폐쇄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 이러한 정부(투자유치국) 조치는 투자유치국에서 투자계약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정부와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BIT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청구로부터 투자유치국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어수단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일부 BIT에서는 투자유치국 조치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유치국에 부여한다. 투자유치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수용된다[26].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보건 보호와 같은 사안에서 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27]. 마찬가지로, Continental v.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객관적인 평가에는 특정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국가의 상당한 재량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8].

2020년 5월 6일, '컬럼비아 지속가능투자센터(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vestment, CCSI)'는 2020년 COVID-19 기간 중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모든 분쟁 사건에 즉각적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사회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공개서한은 COVID-19 팬데믹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 칭하고, 이러한 청구가 제기되면 COVID-19에 맞설 수 있는 지구촌 개도국 전체의 능력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서한에서는 국가가 그러한 조치를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단순히 COVID-19 방역 조치를 적절한 보상 없이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의 중재판정부는 최근 투자계약 관련 청구에서 볼리비아의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볼리비아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답변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볼리비아가 중재진행에서 다양한 기한 연장을 이미 요청했음을 언급했다. 볼리비아의 대리인은 국제로펌인 Dechert의 파리 사무소와 워싱턴 D.C. 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중재판정부는 제출물 준비를 위한 기한 연장을 볼리비아에 이미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중재 참가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Dechert가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한 글을 보면 COVID-19 바이러스가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자적 제출물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29].

3.3.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법, 비즈니스 관련 학계 등의 동향을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COVID-19가 국제중재의 파괴 요인에 불과한 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COVID-19로 인해 정당한 기업은 물론이고 사기꾼에게도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 예컨대, 국제중재에서의 사이버 사기는 지난 수년 동안 우려 사항이었다. COVID-19가 이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해 보이며, 실제로 화상 심리의 보편화로 인해 사이버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30].

한동안은 여러 컨퍼런스에 "COVID-19"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미래 중재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사항들의 쟁점을 이미 제공하는 웨비나도 많이 있다. COVID-19 및 그 법적 영향을

다루는 뉴스레터와 웹사이트가 버섯처럼 확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저널들도 생겼다. 이미 2020년 4월에 WilmerHale에 있는 국제 중재실무그룹(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Group)의 글로벌 부의장인 Franz Schwarz는 동료들과 함께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 계약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책을 썼다. 실제로, “COVID-19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재기관도 이미 존재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상황이므로 지금은 노골적인 폭리를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31].

4.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효과

Kathleen Lynn은 2020년 4월, ‘COVID-19 이후는 중재환경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법원과 변호사들이 화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 인력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신규 졸업생들이 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몇 달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썼다[32].

이 팬데믹이 끝나면 법조계에서는 화상심리 진행에 문제가 없는 첨단기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중재의 디지털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전되는 것이 COVID-19의 장기적인 영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 화상회의 시설이 모든 중재 심리의 기본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 Neil Kaplan의 예상이 옳을 수도 있다[33]. 아래에서는 화상심리가 국제 중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4.1. 긍정적 효과

디지털화된 새로운 비대면 국제중재 세계의 핵심 중 하나는 화상심리이다. 물론 화상심리를 이용하면 중재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낮아지며, 심지어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중재심리 장소까지 이동해야 할 필요도 없고, 종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비대면 중재를

사용하면 손과 손을 통한, 코와 코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화상심리 이슈 외에도, 웨비나 참석에는 출장 및 숙박에 필요한 여행 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실무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4.2. 부정적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재심리 진행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들을 때에는 화상심리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의 전체적인 인상과 같은 대면심리를 통해 조금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대면심리 없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많은 중재규칙이 존재한다. 특히, 전적으로 법적 사안에만 좌우되는 사건의 경우, 심리 없이 중재에 관한 문서만으로도 매우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중재실무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배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화상심리가 대면심리를 만족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이메일을 통한 소통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오랜 경험을 지닌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대륙을 넘나들면서 화상심리를 하는 경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실망스러운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재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술적 도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해 그것이 곧 새로운 일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적으로 저명한 평가를 받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 중재인들은 국제중재의 복잡해진 기술환경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통적인 중재심리가 COVID-19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순전히 정보제공이 목적이라면, 웨비나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대면심리에서는 세대·관할권·산업·전문성이 각기 다른 실무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만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국제중재의 이상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정신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확신을 키울 수도 있다. 화상중재의 세계에서 열리는 웨비나는 뷔페식당에서 중재계 유명 인사를 우연히 만날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며, 중재심리가 끝난 뒤 카페에서 미래의 후보자(중재인)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중재인으로 선정해야 할 사람과 절대 중재인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식별할 수도 없다. COVID-19로 인한 중재환경의 변화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재 패밀리”를 알게 될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 젊은 중재 실무자들을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전망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중재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화상심리는 비교적 유연한 분쟁해결 수단임을 보여줬다. 국제중재는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중재절차를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과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 과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가 법원은 소송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하여 화상 심리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중재는 국가의 절차법이라는 구속 장치에 의존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것을 갖추는데 비교적 유연하다. 앞의 HKIAC는 다른 어떤 중재기관보다 더 완벽한 화상심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HKIAC는 HKIAC의 원격 관리하에 여러 장소와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열리는 완전 화상심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이를 통해, HKIAC는 화상-음성회의 뿐만 아니라 증거의 전자적 제시, 녹취 서비스,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다수의 국내법원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일부 변호사들은 “중재공동체(중재기관, 중재인, 기타 실무자)가 앞장서면, 소송으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COVID-19의 영향으로 소송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경우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재심리 장소·시간·방법과 관련해서 모든 참가자가 기대 이상의 유연성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재의 장점은 두드러진다. 제안된 프로토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원고들은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고에게만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지연으로 인해 득을 보는 피고들은 그것에 대부분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상사분쟁의 조기해결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재기관과 중재인들은 화상심리 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는 물론, IT 기술도 익혀

야 하고 그동안 대면심리에 익숙했던 습관도 포기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화상심리 시스템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과 녹취록이 있으면, 화상심리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명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의 중재인일수록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중재는 저명한 중재인의 가장 기초적인 관심사에 속한다. 지금까지 COVID-19의 출현은 가장 수요가 많은 국제중재인 중 일부가 “이런저런 질병에 취약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COVID-19가 “이상적인 중재인”에 대한 요건에 중재절차 중 예측 가능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강인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국제중재인을 선발할 때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특히 중재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다. 그리고 “완벽한 중재인”의 프로필에서도 약간의 “기술 친화성”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팬데믹 시기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중재인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COVID-19는 중재 실무자들에게 현재 사건의 심리 진행 방식은 물론, 생활방식 전체를 반추해볼 수 있는 이유도 제공한다. 실제로, Alison Ross는 “국제적인 지식과 인지도를 위해 전세계를 제트기로 돌아다니는 것이 지구나 인간에게 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COVID-19가 끝나면 (COVID-20이 즉시 등장하지 않는다면), 국제중재는 예전처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상업·법적 필요와 인간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COVID-19의 출현으로 인해 국제중재의 핵심요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발적이고 유연한 과정을 통해 국제분쟁에서 불평부당하고, 독립적이며, 공정·공평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REFERENCES

- [1] A. Ross. (2020). *The Coronavirus: What Impact?*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15931/the-coronavirus-what-impact>.
- [2] K. Petersen. (2020). *Arbitration in the Time of COVID-19*. The Romanian Perspective, Lexology.
- [3] S. Harwood. (2020). *Key Measures Taken by Arbitral Institution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Lexology(Onlin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2e4ffif3-4d2e-4ala-aa67-883a19f2e674>.
- [4] K. L. Gates. (2020). *COVID-19: How Are Stakeholde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sponding*, Lexology.
- [5] Seoul IDRC. (2020). Virtual Hearing Services—Recent(Online). http://www.sidrc.org/idrc/en/bbs/board_view.do?bo_table=news_en&wr_id=863.
- [6] HKIAC. (2020). *Services and Success Stories*, HKIAC(Online). <https://www.hkiac.org/news/virtual-hearings-hkiac-services-and-successstories>.
- [7] A. Ross. (2020). Covid-19: Participants in SIAC Case Share Success of Virtual Hearing. Global Arbitration Review(GRA)(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583/covid-19-participants-in-siac-case-share>.
- [8] J. Walker. (2020). *Virtual Hearings—the New Normal*.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virtual-hearings-the-new-normal>.
- [9] D. C. Weiss. (2020). Another Lawsuit Is Filed Against Zoom over Alleged Privacy Problems, ABA J.(Online). <https://www.abajournal.com/news/article/another-lawsuit-is-filed-against-zoom-over-alleged-privacy-problems>.
- [10] D. Bailey. (2020). *Virtual View from the Ben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STON Bar ASS'N(Online). <https://www.westonbar.org/so/61N5VoOJe?fbclid=IwAR3gBGUaUfpC8qs0612nMrw-lSDgZkDFiOiCcKGXBjd3SDS8PisCrslHN6c#/main>.
- [11] A. Ross. (2020). *What If Parties Don't Agree on a Virtual Hearing? A Pandemic Pathway*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6483/what-if-parties-dont-agree-on-a-virtual-hearing-a-pandemic-pathway>.
- [12] A. Ross. (2020). *The Coronavirus: What Impact?*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15931/the-coronavirus-what-impact>.
- [13] ACICA. (2020). Important Information for ACICA Users—COVID-19 Update(Online). <https://acica.org.au/important-information-for-acica-users/>.
- [14] HKIAC. (2020). HKIAC Guidelines for Virtual Hearings(Online). https://www.hkiac.org/sites/default/files/ck_filebro.wser/HKIAC%20Guidelines%20fbr%20Virtual%20Hearings_0.pdf. Hong Kong: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15] LCIA. (2020). LCIA Services Update: COVID-19 (Online). <https://www.lcia.org/lcia-servicesupdate-covid-19.aspx>. London :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16] ICC. (2020). Int'L Chamber Com.,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22.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17] SIAC. (2020). Arbitration at SIAC during COVID-19(Online). <https://siac.org.sg/covid-19>.
- [18] SCC. (2020). SCC Platform Made Available to Ad Hoc Arbitrations Globally(Online). <https://sccinstitute.com/about-the-scc/news/2020/scc-platform-made-available-to-ad-hoc-arbitrations-globally/>.
- [19] ICSID. (2020). Hearing Facilities(Online). <https://icsid.worldbank.org/services/hearing-facilities>.
- [20] CIETAC. (2020). CIETAC Launches Guidelines on Proceeding with Arbitration Actively and Prope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Trail). <http://www.cietac.org/index.php?m=Article&a=show&iid=16919&l=en>.
- [21] AAA-ICDR. (2020). Virtual hearings(Online). <https://go.adr.org/covid-19-virtual-hearings.html>.
- [22] A. Ross. (2020). COVID-19: Leading Institutions Speak with One Voice,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5597/covid-19-leadmg-institutions-speak-with-one-voice>.
- [23] J. Fellas. (2020).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Midst of COVID-19, LAW.COM N.Y. L.J. (Online). <https://www.law.com/newyorklawjournal/2020/03/24/international-arbitration-in-the-midst-of-covid-19/?slreturn=20211115042151>.
- [24] K. P. Berger & D. Behn. (2020).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ge of Coron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McGill J. Disp. Resol.*, 6, 76.
- [25] S. Tang. (2020). Coronavirus, Force Majeure Certificat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net. (Online). <http://conflictoflaws.net/2020/coronavirus-fbrce-majeure-certificateand-private-intemational-law/>.

- [26] S. Vasani et al. (2020). Investment Treaty Claims in Pandemic Times: Potential Claims and Defences, LEXOLOGY. URL: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b34dcd5-c68b-433d-900f-4526420bca0d>.
- [27] Philip Morris Brands Sarl et al.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July 8, 2016). ICSID Case No. ARB/10/7, Award, 399.
- [28]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Sept. 5, 2008). ICSID Case No. ARB/03/9, Award, 81.
- [29] DECHERT. (2020). *COVID-19 Coronavirus Business Impact*, ECHERT LLP(Online). <https://www.dechert.com/knowledge/hot-topic/coronavirus-busness-impact.html>.
- [30] A. Ross. (2020). *The Coronavirus: What Impact?*,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15931/the-coronavirus-what-impact>.
- [31] K. Lynn. (2020). *The Legal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After COVID-19*, N.Y. STATE Bar Ass'N. (Online). <https://nysba.org/the-legal-worki-will-never-be-the-same-after-covid-19/>.
- [32] N. Kaplan. (2020). *Kaplan: How We Must Adapt to COVID-19*, GAR(Online). <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article/1222179/kaplan-how-we-must-adapt-to-covid-19>.
- [33] J. Risse. (2019). An inconvenient truth: the complexity problem and limits to justice. *Arbitration International*, 35(3), 291-307.

김 용 일(Yong-Il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국제통상, 국제상사 및 투자중재, 무역법규
- E-Mail : kyi0407@ut.ac.kr

황 지 현(Ji-Hyeon Hwang)

[정회원]



- 201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국제통상, 무역실무, 국제상사중재, 국제거래법
- E-Mail : jhhwang@gwnu.ac.kr